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청 심사 시 처분의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등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소청 결정에 오기·착오 등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절차 하자 사건의 서면심리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, 제10조)

-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당사자 편의성 제고

나. 소청 결정의 경정결정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2)

- 소청 결정에 오기·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다. 관보게재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(안 제16조)

-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소청인의 주소, 성명,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소청인의 주소·성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되 사건번호, 사건명을 추가하여 게재토록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다. 다만,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 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(취소명령 포함) 결정을 하는 때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결정의 경정) 제15조에 따른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·

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소청인의”를 “사건번호, 사건명, 소청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소청인의 주소, 성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의2(각하)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.</u> <u>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제10조(진술권) ① 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10조(진술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있다. <u>다만,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(취소 명령 포함) 결정을 하는 때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</u>

②・③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6조(결정서의 송부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<u>소청인의 주소·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,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</u> <u><신설></u>	<u>소청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<u>제15조의2(결정의 경정) 제15조에 따른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·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.</u> 제16조(결정서의 송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사건번호, 사건명, 소청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<u>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소청인의 주소, 성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하여야 한다.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행정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665